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심 사 보 고 서

2026. 2.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5년 10월 14일, 이용우의원 등 10인

나. 회부일자: 2025년 10월 15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29회국회(정기회)

제6차 전체회의(2025.11.14.)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원회부

제2차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2025.11.18.) 상정, 축조심사

제3차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2025.11.21.) 상정, 축조심사

제432회국회(임시회)

제1차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2026.2.5.) 상정, 축조심사

제2차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2026.2.12.) 상정, 축조심사,
의결(대안반영 폐기)

제2차 전체회의(2026.2.12.) 상정, 소위심사보고, 찬반토론, 의결(대
안반영 폐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 이용우의원)

현행법은 업무상 재해를 입은 노동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재해보상을 신청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을 통해 요양, 장해, 유족급여 등 각종 보험급여를 지급받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재해와 업무 사이의 연관성을 입증할 책임이 재해자에게 주어져 있고 보상신청 및 부가적 서류의 작성이 복잡하여 많은 재해자들은 법률대리인을 통해 재해보상신청을 하고 있지만, 저소득 노동자들은 이러한 법률적 조력을 받는 것이 어려운 것이 현실임. 이에 현행법을 개정하여 근로복지공단의 업무상 재해의 심사에 있어 국가의 지원으로 공인노무사와 변호사가 재해자를 대리할 수 있도록 하여, 취약 노동자들의 재해보상과 일터 복귀를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126조의3 신설).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한석현)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근로복지공단이 사회취약계층을 위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에 따른 보험급여의 청구, 제103조에 따른 심사 청구 및 제106조에 따른 재심사 청구에 대하여 변호사나 공인노무사로 하여금 이를 대리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임.

개정안을 통하여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국가 차원의 법률대리인 지원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이는데, 취약계층에 대한 두터운 보호 및 산

재보상의 공공안전망 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측면이 있는 등 의의가 있음.

다만, 개정안의 문구 중 ‘사회취약계층’의 의미가 불분명한 측면이 있고, 개정안은 변호사나 공인노무사로 하여금 대리하게 하려는 경우의 요건, 대상, 지원범위 등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변호사·공인노무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는 사회취약계층의 기준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음.

4. 대체토론의 요지

생략

5. 소위원회 심사내용

생략

6. 심사결과

대안반영폐기

7. 소수의견의 요지

없음

8. 기타사항

없 음